

인천대학교 대학원 공결 신청 안내(학생용)

1 대학원 공결 대원칙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제3조 ④ 및 대학원별 학칙 시행세칙에 따라, 일부사유*를 제외하고 공결 인정여부는 강의 담당 교원 재량에 따름

* 예비군훈련·병역판정검사

- 학기당 공결 상한선

- 대학원, 동북아물류대학원: 총 수업일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음
- 교육, 정책, 공학, 정보기술, 문화대학원: 과목당 최대 3회(수업일 기준)

- 교과목 특성 및 교원 재량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2 대학원 공결 관련 규정

- 「인천대학교 출결 및 휴·보강 관리지침」

공결 사유	결석 허용 기간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참가 기간
○ 병역관계로 인한 결석	해당 기간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본인 결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본인 출산 - 배우자 출산 -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 배우자의 사망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 7일 · 1일 · 20일 · 5일 · 7일 · 5일 · 3일 · 3일 · 3일
○ 입원 및 치료(진단서 제출, 출석불가기간 명시)	4주 이내
○ 생리통으로 인한 결석(증빙불요)	월 1일
○ 군 제대 복학시 개강 후 2주 이내	해당 기간
○ 학과 주관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해당 기간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출석인정원 및 증빙서류 제출 불요	해당 기간
○ 산업체 출장(계약학과)	과목별 수업시수의 10% 이내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행사 기간

□ 「대학원별 학칙 시행세칙」

대학원	학칙 시행세칙
교육대학원	제8조(결석사유)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통산하여 3주를 초과할수 없다.
정책대학원	제18조(결석사유의 인정) ①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과목당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17.> ② 「예비군법」 및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에 참여하게 되어 결석이 발생하는 경우 담당교과목의 교원은 해당 기간의 수업을 공결로 인정하여야 하며, 성적처리나 학습자료 제공 등에 있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다. <신설 2025.1.17.>
공학대학원	제24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정보기술대학원	제24조(결석사유의 인정)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문화대학원	제17조(결석사유의 인정) ① 공무출장, 질병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결석하고자 할 때에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결석사유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 한하며, 3회까지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9. 1.> ②학생이예비군법및병역법에따라동원또는훈련에참여하는경우,해당기간을공결로인정하며,담당교과목의교원또는강사는학생이동원이나훈련참여를이유로출석,성적처리등에불리한처우를받지않도록하며,학습자료를제공하는등학생의학습권을보장한다.

3

대학원 공결 신청방법

□ 메뉴 위치: [통합정보→학사행정→수업→출석관리→출석인정신청]

- ① 공결신청 클릭
- ② 강좌소속분류 선택 (학부 수업 → 대학 | 대학원 수업 → 각 대학원)
- ③ 공결사유 선택 및 공결기간 설정
- ④ 증빙자료 업로드 (생리공결 외 증빙자료 업로드 필수, 증빙자료 다음 페이지 참조)
- ⑤ 공결 강좌 선택 후 신청, 최종 승인여부 확인

학생신청정보

학번

성명

영문성명

생년월일/성별

여성

국적

과정구분/소속분류

대학(원)

학과(부)

전공

학적상태/학년(차)

재학

3

취득학점/발급공통점

이수한기(필입인정)

3 (0)

입학구분/입학일자

신입

2025-03-01

휴대폰번호

이메일

공결신청내역

가이드라인

안내사항

공결신청

신청취소

역할

년도

학기

승인상태

신청일자

반영여부

공결사유

공결기간

강좌정보

수업(보강)

증빙파일

비고

시작일자

종료일자

강좌소속분류

개설학과(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자

교시

공결신청

학번/성명

강좌소속분류

공결사유

선택

증빙자료

신청일자

신청년도/학기

공결기간

2026-05-06 수

2026-05-06 수

비고

검색결과

강좌정보

수업

보강

담당

비고

강좌소속분류

개설학과(부)

학수번호

교과목명

일자

교시

일자

교시

교수명

공결신청내역

년도

학기

승인상태

신청

담당교수승인불

2026

담당교수승인불

2026

승인현황

순서

구분

소속

성명

처리상태

처리일시

2

담당교수

학과

진행

1

학생

학과

신청

2026-

4

공결 신청 사유별 증빙자료

각 대학원에서 안내하고 있는 일반적인 공결 사유 증빙서류이며, 담당 교원에 따라 인정 증빙서류 및 승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결 신청 전 강의 담당 교원에게 제출서류를 한번 더 확인하시기를 권고합니다.

□ 각종 공모전 및 전국대회 참가

○ 첨부서류

- 공모전 및 전국대회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포스터 등)
- 해당 공모전 및 대회 참가를 증빙할 수 있는 증빙 자료
- 상기 자료 외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기타 서류

□ 병역 관계로 인한 결석(공결 인정 필수항목)

- 첨부서류
 - 교육훈련소집필증(예비군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력동원훈련소집 입영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병역판정신체검사 출석확인서(병무청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 군 복무로 인한 결석은 해당 사유 아님

□ 경조사로 인한 결석

- 첨부서류
 - 본인결혼: 웨딩홀 계약서·청첩장 등 결혼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가족관계증명서, 결혼식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본인 출산: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출산: 가족관계증명서, 출산확인서·출산예정증명서 등
 -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자녀와 그 배우자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백(숙)부모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 입원 및 치료

- 첨부서류
 - 의사의 소견이 들어간 진단서
 - 하루 이상 결석 시 격리 혹은 출석 불가 기간 진단서에 명시
 -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교원 재량에 따름

□ 군 제대 복학 시 개강 후 2주 이내

- 학기 중 전역하여 선복학 후 개강 2주까지의 수업을 부득이하게 빠지는 경우
- 첨부서류: 전역예정증명서

□ 교육 실습, 야외 및 외부실습, 졸업시험(전시 및 공연 포함)

- 학과의 야외 및 외부 실습이나 교직과목의 교육 실습, 졸업시험 및 전시 등에 한함
- 외부 기관 실습 및 개인 목적을 위한 캠프 참가의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외부 기관 행사에 주최 측의 요청으로 참여하는 경우(스태프, 기자 등) 주최 측의 공문 공결 요청을 권고하며, 승인 여부는 담당 교원의 재량임.

□ 수강신청 과목변경(추가) 및 폐강으로 인한 수강변경

- 별도 서류 및 공결 신청 필요 없음(자동처리)

□ 총장 및 대학(원)장이 승인한 교내외 행사 참가

- 첨부서류
 - 행사참가 확인서 혹은 공결 협조문